

10월5주차 전체위원회 심의의결서

연번	접수번호	건축구분	심의구분	대지위치	대지면적	건축면적	연면적	건폐율	용적율	주용도	층수	용도지역	일시	심의결과	의결내용
1	20206500000P002861	신축	이의신청	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법환동 1525	495	98.9	98.9	19.9798	19.9798	제1종근린생활시설	1/0	보전녹지지역	20.10.29	부결	자연경관이 우수한 지역이고 건축행위 시 자연환경 훼손이 우려되어 건축위원회에서는 부득이하게 건축행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부결합니다. 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」 제35조 및 동법시행령 제40조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, 이의신청 여부에 관계없이 「행정심판법」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「행정소송법」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2	20206500000P002771	신축	재심의	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하예동 734	2,832	163.53	296.57	5.77	7.92	단독주택	2/1	보전녹지지역	20.10.29	보류	법령 검토 후 심의 진행합니다.
3	20206500000P002876	신축	신규	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산 35	19,318	1,697.89	2,955.5	8.7892	5.1222	문화및집회시설	1/1	생산관리지역	20.10.29	보류	현장확인 후 심의 진행합니다. 건축관계자 심의 참석바랍니다.
4	20206500000P002852	신축	기타	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상가리 산 1-8	9,978	1,193.13	1,643.9	11.9576	16.48	단독주택	2/	계획관리지역	20.10.29	원안동의	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, 건축 허가(신고)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(신고) 가능 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.